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광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3
----------	------

발의연월일 : 2016년 6월 1일

발 의 자 : 유광상 의원(1명)

찬 성 자 : 문형주, 오경환, 장인홍,
최웅식, 조규영, 오봉수,
김정태, 김춘수, 신원철 의원
(9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의 직위를 담당 실·국장 및 과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나.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제한을 폐지함.(안 제6조)

다.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2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물순환안전국장”을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관리정책과장”을 “물이용부담금 관리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물순환안전국장</u>으로 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u>물관리정책과장</u>이 된다.</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실·국장</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u>-----.</p>
<p>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 -----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 ----- -----.</p>
<p><u>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삭제></p>

[별첨 2]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원 유광상